

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 업)의 정의와 등록 요건

안녕하세요, 윤정옥 변호사입니다.

많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,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종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미등록 이슈가 발견되기도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**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의와 등록 요건**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의

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**전자지급결제대행업**이라 합니다(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호).

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‘PG(Payment Gateway) 서비스’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통상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(이하 “**제 1 차 PG 사**”)를 지칭합니다. 예를 들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, 해당 물건 구입 대금은 고객→카드사→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→인터넷 쇼핑몰 순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됩니다. 대표적인 제 1 차 PG 사로 나이스정보통신, KG 이니시스,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있습니다.

또는,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가 1 차 PG 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직접 1 차 PG 사와 가맹 계약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제대행 자체는 1 차 PG 사에 맡기고,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. 이 경우 인터넷 쇼핑몰,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을 “**제 2 차 PG 사**”로 칭합니다.

이 외에도 일부 스타트업들의 경우 i)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ii)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를 iii) 구매자 또는 1 차 PG 사로부터 스타트업이 직접 수취한 다음 iv)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게 되는데, 많은 스타트업이 이를 간과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2.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

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(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제 2 항). 다만,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(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제 2 항 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3 항).

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요건	상세
자본금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억 원 단, 분기별 결제대행금액(이용자가 지급한 재화 및 용역의 매출총액)이 30 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
재무건전성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채비율 200% 이내 등록신청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인 경우 등록신청인이 금융기관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별도 부채비율 적용됨 산식= [{부채총액(미상환발행잔액+고객예수금)}/ 자기자본] × 100 부채비율 산정시점은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(또는 분기말) 대차대조표 내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를 사용
인적 기준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당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
물적시설 기준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,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 등 *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음
등록 결격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출자자*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말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.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최대주주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10% 이상 주주 등(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참조) 주요출자자가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취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주요출자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 대주주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출자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자 주요출자자가 허가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등록신청 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관, 등기부 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주거래은행에서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감사보고서(외감대상) 또는 확인받은 재무제표 제출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, 예상 수지계산서 등록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에 관한 3년간 예상 사업계획서, 수지계산서 등을 추산해서 작성후 제출 전문인력,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전산전문인력(전산경력 2년, 5명 이상)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산실, 전산설비(서버, DB, 백업장치, 보안시스템, 네트워크 장비 등) 및 업무용 프로그램 현황 별도의 물적 시설 설비 현황 제출 자료 목록이 있음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

3.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미등록에 대한 제재

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(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).

따라서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사업 모델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전자금융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, 많은 공을 들여 키운 회사가 급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, 대금 결제 프로세스 등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이 필요합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2 SEUM Law.

윤정옥 변호사

Partner

jungok.yun@seumlaw.com